



church law 제8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8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1. 4. 1.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치원리로 운영된 각 교단은 자체 헌법이 있고, 지교회는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이 있다. 교회와 소속교단과의 분쟁으로 국가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종교단체 분쟁을 판단할 때 법원은 판단 및 판결의 원칙들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될 뿐 그렇지 않는 경우, 교단헌법은 지교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 판결, 소속교단이 교단헌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지교회 정관변경 명령 및 지시의 효력 부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인정된 교회에 대하여 정관 제정의 권한, 민법의 법인규정에 유추적용, 교단탈퇴는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 규정에, 분립과 합병은 법인의 해산 규정에 유추적용하는 등의 중요한 결의들이 판례법리로 교회 분쟁을 처리해 왔다.

소속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계약

관계로 지교회의 교단탈퇴를 교단이, 교단의 지교회를 강제로 탈퇴케 하는 행위 등은 각 교단과 지교회가 거부할 수 없는 독자적인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왔다. 특히 지교회 정관 작성은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지교회 정관에 “소속교단이 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며, 정관이 교단헌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또한 “본 교회 담임목사는 소속노회와 교단에서 면직된다고 할지라도 본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는 규정을 둔 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담임목사를 노회에서 면직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담임목사로서 법률적 대표로서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당여한 결과로서 소속교단헌법을 교회정관의 상위법으로 보지 않는 결과이다. 지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 때문이다. 이런 판례에 따라 노회가 담임목사를 면직해도 여전히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단탈퇴 역시 적법한 유효한 결의가 된다.

이러한 정관이 없는 경우, 다수 교인들은 담임목사 면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법원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여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지교회의 교단탈퇴, 교단의 교단 가입취소 및 강제 탈퇴 시키는 행위는 상호 고유권한이며 이를 비난할 수 없다. 이제 무법, 떼법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길 수 없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고찰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목 차

1. 서론
2. 장로회 총회 정의와 치리회 제
 - 1) 총회(總會) 정의
 - (1) 장로회와 최고 치리회, 총회
 - (2)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
 - (3) 총회의 실제법과 절차법
 - 2) 각급 치리회의 등급과 관할
 - (1) 치리회의 등급 (2) 치리회의 관할 범위
 - (3) 치리회의 3심제도
3. 총회 조직과 구성원(회원, 총대)
 - 1) 조직
 - (1) 각 노회에서 파송 (2) 목사와 장로 동수
 - (3) 총대 파송 기준(조직교회)
 - (4) 총대 명단 송달과 부총대 선정
 - (5) 총대 파송의 특별원칙 (6) 언권회원
 - (7)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선출 불가
 - (8)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
 - 2) 총회 정기위원, 실행, 상설, 특별, 선거관리위원회
 - (1) 정기위원 (2) 실행위원회 (3) 상설위원회
 -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 3) 총회 회원권 효력 발생 시점
4. 소집절차
 - 1) 총회 개회 공지 의무 (2) 회의목적 사전 공지 문제
 - 3) 개회 선언과 회순채택
5.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
 - 1) 의사정족수 (2) 의결정족수
 - (1) 일반 결의 정족수 (2) 헌법개정 정족수
 - (3) 총회규칙 개정 정족수
 - 3) 성수 유지원칙
6. 안건 상정방법
 - 1) 노회의 정원과 현의부를 통한 총회 상정
 - 2)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 3) 직전 총회에서 위임받은 각 부서 안건
 - 4) 직전 총회의 특별안건 (5) 총회입원회의 보고 안건
 - 6) 상설위원회의 보고 안건
7. 의결방법
 - 1) 동의와 재청 (2) 표결 방법
8. 총회의 직무와 권한
 - 1) 총회 개념 (2) 총회의 직무 (3) 총회의 권한
 - 4) 총회 산하기관의 법적 검토
 - (1) 산하기관의 정의
 - (2) 국가 법령에 의한 기관과의 관계
 - (3) 전국 교회에 대한 총회의 구속력
9. 총회의 입법·사법·행정권
 - 1) 총회의 입법권
 - 2) 총회의 사법권
 - (1) 사법권 제도 (2) 상설 재판의 의미와 최종심
 - (3) 재판국 구성과 특징
 - (4) 총회 파회 후 상설재판국 이첩 제도
 - (5)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시점
 - 3) 총회의 행정권
10. 총회의 사단성
11. 총회 폐회(파회)와 회의록
 - 1) 파회와 폐회 (2) 잔무의 성격 (3) 회의록 채택과 원칙
 - 4) 채택된 회의록 공지 의무
12. 결론

〈요약〉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 노회, 총회를 상설치리회로서 존속한다. 노회와 총회 회무를 마치는 것을 폐회라 한다. 그러나 총회는 노회와 다르게 임시총회가 없다는 이유로 폐회는 파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존 코튼(John Cotton)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지역교회를 강조하여 장로정치보다 회중정치가 성경적이며, 노회와 총회는 비상설기관이라는 주장한다. 또한 J. A. Hodge 『정치문답조례』에서 총회를 비상설기관으로서 파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번역한 객안련 선교사와 이를 근거로 역술한 박병진 목사는 총회가 파회되면 해산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총회를 조직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역본 『정치문답조례』에 첨가했다. 이는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총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며 전국 교회를 대표한다. 총회는 장로회의 3심제도의 최고회로서 모든 분쟁을 진압하고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은 총회 개회 전에 현의부를 통해 적법하게 본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전국 교회를 구속하는 등 그 권위가 인정되며, 전국 교회는 순종해야 한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 (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교회 정관법 총칙」 외 다수.

1. 서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8-9)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행 2:1-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후 승천하셨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은 신약계시를 완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2천 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으며,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열되었다. 이어 1517년에는 서방교회에서 로마가톨릭교회와 개혁신교로 분열되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대항하는 두 가지 무기로 교리에 따른 신앙고백과 교회법이였다. 이것이 세계 각처의 개혁신교로 확산

되어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신학과 정신이 계승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되었다. 제1회 총회장은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이 총회는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1943년에는 폐쇄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일본기독교단 조선장로회 연맹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폐쇄되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억압과 강탈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그 해 10월이 되자 전국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교구에 가입했던 노회들은 교구를 탈퇴하고 다시 노회를 복구했다.

해방이 되자 일제에 의해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38선으로 국토가 양단되면서 이북에서 5도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남에서는 1946년 남부총회가 소집되어 1943년 중단되었던 총회가 복구되었다. 이리하여 총회 횡수가 3년이나 비어 지금의 제105회 총회(2021년 9월)가 되었다(1회는 6.25전쟁으로).

본 교단 총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 시행착오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 복음의 전래 과정에서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성경과 신학, 교리, 교회 운영방식과 교회법에 근거하여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선교사들에게서 배웠던 지식과 정보들은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전수됐고, 전수받은 자들은 또 다시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수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단의 정체성과 범통성을 계승한 진출한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물론 교단의 교권은 정체성과 범통성이 특정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어졌다는 점에서 때로는 독점으로

인한 폐단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체성과 법통성은 계승되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교단총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은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야 한다. 교단의 정체성과 법통성을 제대로 교육받았거나 전수받은 지도자 없이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이어져 갈 경우 총회는 혼란과 그동안 쌓아올린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질 것이다.

교단총회의 정체성과 법통성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지도자의 실제적, 내용적 지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교권의 중심부에 있는 지도자들의 개인적 수준은 곧 교단의 수준이 돼 버리면서 교단은 커다란 객관적인 준거나 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된다. 본 논고는 총회의 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회를 어떻게 이해하여 섬기고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장로회 총회 정의와 치리회 제도

장로회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¹⁾ 박형룡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를 다룬다.²⁾ 그는 “신약에 나타난 사도적 교회 정치의 조직 형식은 장로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개혁파, 장로파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정치의 상세전부(詳細前部)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적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引出)된다”라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은 “교회의 유형함을 시인하는 동시에 이것의 조직”을 또한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조직은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직은 단순한 부수적 산물이다. 이것은 필요한 부수적 산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이 본무적(本務的)임은 이것이 명령된 때문이다. 우리는 조직을 방편으로 하여 단결과 성장을 가지는 바, 이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큰 선교사업을 성취함에 자체 번식의 큰 방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가 장로교인 되는 것이 교회 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³⁾

교회에서 정치·행정·조직의 필요성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부수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고 훼손당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정치는 복음전도의 수단이 될 때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정치로 권력을 삼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때 정치는 악한 것이 되어, 사탄의 이용물이 된다. 칼빈의 제자인 베자(Theodore Beza)는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한다. 정치문답조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문답조례 제198문은 일정한 형태의 교회 정치가 필요한가?

<답>교회에 일정한 형태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전에 그 법을 만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1조: 고전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2)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103-156.

3)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36.

고 알려져 있다. 사람의 어떤 공동체나 개인도 일반적이고 가변적인 원칙이나 의견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이나 교회 정치 형태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불필요한 것일 수 없으며, 일정한 정치가 없는 사회나 교회는 자주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겔43:11,12, 딤후 1:13, 갈 6:16, 빌 3:16)⁴⁾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치리회 제도를 두었다. 시대에 따라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복음의 본질과 교리 및 정치에 대한 쟁론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리회는 필수적이다.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와 총회가 순서에 따라 지교회 화평과 분쟁을 진압한다. 이러한 치리권 행사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⁵⁾

치리회는 사건 처리를 위하여 관할의 범위를 정하여 각 치리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각 치리회의 결정은 해당 치리회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장로교회에 동일하게 미친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인적 단체이다. 그 단체의 구성원인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질서와 일정한 정치가 필요하며 이는 유형교회의 특징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를 통해 사익을 위해 교권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이다. 정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를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악하게 이용하여 사탄의 이용물이 될 때에 언제나 분쟁이 심화된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치리회가 필요하며 이는 장로회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신학 역사 실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한다.

1) 총회(總會) 정의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아직 치리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선교사 공의회, 혹은 연합공의회를 통해 치리회 제도를 학습하였다. 장차 치리회가 조직될 때를 대비하여 한국인 최초의 조사와 장로들과 함께 공의회를 조직하여 치리회 제도를 익히고 있었다. 한국에 최초의 7인 목사를 안수하여 임직하는 1907년에 이르러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독노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12년에 이르러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어 한국장로교회의 최고 치리회가 되었다.

(1) 장로회와 최고 치리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구분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다.⁶⁾ 최고회란 총회 위에 상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3심제도 및 입법·행정의 최고 치리회이다.

(2)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구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는 ‘총회규칙’이 있다. 이때 헌법을 교회헌법,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 헌법)이라 한다. 헌법은 전국 지교회와

4) J. A. Hodge, 『교회 정치문답 조례』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125.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1조, 제2조.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1조.

모든 치리회에 적용되는 헌법이라면 총회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은 총회와 총회규칙보다 넓은 개념이다. 교회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장로회 12신조 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조'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라고 한다.⁷⁾ 장로와 집사,⁸⁾ 목사⁹⁾ 임직시 서약 내용에 의하면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 하느뇨?"라고 묻는다. 여기서도 '장로회 신조와 정치'이지 '본 총회의 신조와 정치'라고 말하지 않는다.¹⁰⁾

(3) 총회의 실제법과 절차법

총회 규정은 교회헌법 정치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치편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실제법이라고 하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를 절차법이라고 한다. 첫 헌법인 1922년 헌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1929년 개정헌법과 1934년 개역헌법은 실제법을 상편, 절차법을 하편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법(상편)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기동과 원리를 내용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절차법(하편)에는 실제법인 장로회 정치의 원리와 기동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와 시행세칙 등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¹¹⁾

2) 각급 치리회의 등급과 관할

(1) 치리회의 등급

치리회의 최고회인 총회와 각급 치리회로 구성되며, 총회와 각급 치리회의 조직은 교회헌법 규정으로 정하는 데 당회와 노회가 있다. 당회와 노회는 각 지방에 따라 개체로 조직된다. 특정 지역의 개체로 존속한 치리회를 '교회 각 치리회'¹²⁾라고 한다. 교회 각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에 등급(等級)을 인정한다.¹³⁾

각 치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당회 수만큼, 각 지방의 노회 수만큼의 치리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되어 있다. 각 치리회의 결정은 각 치리회 관할하에 있는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¹⁴⁾ 하지만 각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다.¹⁵⁾ 상회라고 할지라도 고유한 특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각 치리회는 노회적 성질에 의한 목사¹⁶⁾와 장로¹⁶⁾를 구성원으로 하

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 신조 서언 부분 참조.
 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3장 제2조.
 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4장 제2조.
 1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3장 제2조.

11)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고양: 브엘복스, 1919), 61-63. 참조.
 1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1조.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2조 전문.
 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2조.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8장 제2조 제1항.
 16) 1922년 헌법에는 "각 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장로 뿐인고로 각 회가 노회적 성질이 있느니라"(정치 제8장 제2조)고 했으나 1929년, 1934년 헌법은 "각 회 회원은 목사¹⁶⁾와 장로 뿐인고로 각 회

여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다. 하지만 각각의 권리와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치리회의 관할 범위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교회와 교인에 대한 문제, 목사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회헌법에 치리회의 직무의 범위에 따라 관할을 정하고 있다.¹⁷⁾ 관할을 위반한 교인 처리를 위법이라는 총회 결의도 있다.¹⁸⁾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들과 각 당회를 관할로 하는 노회¹⁹⁾와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이상 노회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대회가 있다.²⁰⁾ 총회는 전국 노회를 관할로 하는 최고치리회이다.²¹⁾ 그리고 교인 장로 등과 목사후보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등은 다 관할을 두고 있으며 그 관할 치리회에 소속되어 고유직무를 수행한다.²²⁾

(3) 치리회의 3심제도

각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관할을 규정한 교회헌법은 자연스럽게 3심제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정하고 있다. 장로회 정치에서 3심제도는 권징재판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결정들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종류의 치리회에서 세 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 치리회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중한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 할 수 있다.

1961년 이전 헌법에서는 문헌상 '3심제도'라는 용어는 없었다. 그러나 1961년 고신측과 합동하면서 1934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총론을 삽입할 때 '3심제도'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기 이전에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3심제도의 원리하에서 정치편 각 규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1961년 헌법을 개정할 때 정치편 총론을 삽입시 '3심제도'를 잘못 규정했다. 총론에 의하면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했다.²³⁾

당회의 상회로 노회, 대회, 총회를 3심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회는 3심제에 누락된다. 이는 관할에 대한 장로회의 독특한 정치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 따라서 본 규정은 "당회는 목사인 강도 치리장로와 장로인 치리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당회, 노회, 대회와 노회, 대회, 총회의 3심제도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해야 한다.²⁴⁾ 치리회인 당회 소속 관할하에 있는 장로와 교인들은 당회, 노회, 대회

가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라고 했다(정치 제9장 제2조). 이는 장로의 두 반으로 "장로(감독)와 장로"로 구분했기 때문이다(정치 제3장 제2조, 1929, 1934). 이런 개념 때문에 '장로 분이다'에서 '목사와 장로 뿐이다'로 개정되었다.

1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I. 권징조례 제19조.

18) 관할 위반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1회 총회(1986)는 "교인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므로 노회가 직접 권징하여 수찬정지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로 판결한다."

1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0장 제2조.

2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1장 제1조.

2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1조. 제2조.

2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4장, 제5장, 제6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참조.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총론 제5항.

24)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140-42.

로서 대회가 최종회가 된다.

노회 소속 관할하에 있는 목사는 노회, 대회, 총회로서 총회가 최종회가 된다. 그러나 교회 헌법에 규정된 대회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당회, 노회, 총회로 3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관할인 노회 소속인 목사는 노회, 총회로 2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3. 총회 조직과 구성원(회원, 총대)

1) 조직

총회 조직²⁵⁾은 첫째,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둘째,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같게 한다(동수). 셋째,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는 각 노회 소속 7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 넷째, 노회는 총대를 투표 선거하여 선출한다. 다섯째,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여섯째,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²⁶⁾ 일곱째, 7당회가 못 되는 경우에 과반수인 4당회 이상일 경우,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²⁷⁾ 여덟째,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²⁸⁾ 아홉째,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²⁹⁾

(1) 각 노회에서 파송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장로회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된다. 이는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와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로 치리회를 구성한 장로회 정치를 원리로 하기 때문이다.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됨으로 노회적 성질이 있다.³⁰⁾ 노회는 소속목사와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목사로 구성되며, 목사의 임면권, 장로의 시취권 교회 설립 및 합병, 폐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노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총회 총대로 파송했다면 총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총대로 받아야 한다. 총회 전에 총대에 대한 검사는 천서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³¹⁾

(2) 목사와 장로 동수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같게 한다(동수). 최고 치리회인 총회총대(대의원)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조직한다. 장로회의 정치원리는 감독(목사) 중심의 감독정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회중 중심의 회중정치도 아니다. 장로회 정치는 감독(목사)과 회중의 대표인 장로로 치리회를 조직하여 교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제와 균형으로 절대 권력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제도이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2조.

26) 부총대를 선임해 두지 아니할 경우, 총대로 선임된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파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만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2장 제1조 제1항).

27) 해 노회의 당회가 25당회일 경우, 목사 3명, 장로 3명과 별도로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하여 총 목사 4인, 장로 4인을 파송할 수 있다.

28) 해 노회의 당회가 24당회일 경우 목사 3인 장로 3인을 파송하되 목사 1인과 장로 1인을 언권회원을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9) 위임목사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당회에서 위임목사 1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로는 1당회에서 2인이상 파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한 당회에서 적어도 목사와 장로를 합쳐 2인 이하로 파송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8장 제2조.

3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6.

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한다. 여기서 모든 결정의 공포는 목사 총회장으로 제한한 이유는 목사에게 주어진 강도권인 말씀으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나 당회장(위임목사)은 1인이며, 당회원인 장로는 복수인 관계로 동수개념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당회는 표결에서 당회장이 장로 1인과 같은 1표권행사가 아니라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같은 권한이다. 이는 목사만으로 결의되지 못하며, 장로들만으로도 결의되지 못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이다. 노회는 모든 소속 목사가 회원으로 노회 구성원이다. 여기에 장로총대는 소속 지교회의 세례교인 비율에 따라 총대를 파송한다.³²⁾ 이런 이유 때문에 노회는 한국적 장로회 정치원리에서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사가 장로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일부 노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로만 노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3) 총대 파송 기준(조직교회)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는 각 노회 소속 7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 노회가 제아무리 미조직교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총회 총대 파송 인원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적어도 총대 파송에 있어서 미조직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있을 지라도 당회가 조직된 1개 교회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다. 7당회당 목사 1인 장로 1인씩을 파송한다. 이 규정은 총회 전체 총대 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3당회에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파송했던 규정을 변경하여 현재는 7당회당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

(4) 총대 명단 송달과 부총대 선정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총회 총대는 오직 정기회에서만 선출하여 파송한다. 이런 이유로 총회 총대가 특별한 사정으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자격에 하자가 있을 때 결원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부총대를 정기회에서 선출하고 총대 결원이 있을 때에 노회장이 부총대 중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³³⁾

(5) 총대 파송의 특별원칙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 과반수인 4당회 이상일 경우,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³⁴⁾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³⁵⁾

(6) 언권회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³⁶⁾ 대한예수교

3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22장 제2조.

34) 해 노회의 당회가 25당회일 경우, 목사 3명, 장로 3명과 별도로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하여 총 목사 4인, 장로 4인을 파송할 수 있다.

35) 위임목사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으므로 당회에서 위임목사 1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로는 1당회에서 2인이상 파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한 당회에서 적어도 목사와 장로를 합쳐 2인 이하로 파송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6) 해 노회의 당회가 24당회일 경우 목사 3인 장로 3인을 파송하되 목사 1인과 장로 1인을 언권회원을

3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0장 제2조.

장로회 헌법(합동)에서 총회 언권회원에 관한 규정은 본 조항과 정치편 2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장로회 총회의 파송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외국의 장로회에서 파송증서만 가지고 와서 본 총회 산하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외국 선교사,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언권회원은 임의로 발언할 수 없고 오직 총회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회장인 총회장의 허락이 아니라 본회의 허락이다.³⁷⁾ 전통적인 관례는 각 노회에서 외부 인사가 본회에서 인사를 할 때 이를 ‘언권회원으로 허락하다’라고 회의록에 기록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언권회원’이 아니라 ‘언권’이다. ‘언권을 허락하다’라고 해야 한다.

(7)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선출 불가
 각 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³⁸⁾ 정리하면 총대 선출 시기는 ① 총회 전 정기노회 ② 총회 개회 6개월 이전에 택해야 한다.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시기의 문제는 총회를 소집한 날과 총회 전 정기노회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같은 교단헌법 규정은 총회규칙을 살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총회 전 정기노회는 교단헌법과 총회 규칙을 살피지 않으면, 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 선출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12장 제6조에 “총회는 매년 1회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22장 제3조.

3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22장 제1조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에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정한 날짜”는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총회규칙에 총회는 매년 9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할 수 없다고 했으니 총회 전 정기노회는 총회 개회 전 6개월 이내에 회집되어야 한다. 예컨대 총회가 9월 21일이며, 3월 22일 이후에 정기노회가 소집되어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소집된 정기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매년 총회 개회 날짜가 변동이 있으므로 노회 정기노회의 소집일도 이와 관련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출된 총대의 선출이 적법하게 된다.

전국의 각 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정기노회의 소집날짜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반드시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정기노회 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기노회에서 총회 총대를 선출하고 총회 총대는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회는 10월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인 4월에 정기노회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총회 총대는 총회 개회 6개월을 격하여 택할 수 없다”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3월에 정기노회를 갖는 일부 노회는 이 요건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같은 요건 충족을 위해 노회 규칙으로 정기노회 일정을 법리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일부 노회에서는 특정 회원에 대해 영구 총대로 결의하여 매년 자동 총대로 파송한다. 영구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이므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 총대로 결정해 놓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자와 이전에 영구 총대로 결정해 놓은 총대를 함께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이는 적법하다. 영구 총대로 결의했지만 매년 총대 선출하는 본회에서 함께 승인 결의를 하는 행위는 새로운 결의로 인정된다.

노회 현장에서 총대를 선출하지 않고 각 시찰 단위로 선임하여 파송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 것으로 제80회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지만 시찰 단위로 총대후보로 선출하고 노회 현장, 본회에서 승인 결의를 할 경우 적법하다. 법은 지켜야 한다. 법은 모든 논쟁의 최종적인 심판자이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각종 규정들을 지키도록,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혹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총회는 매년 9월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월 정기노회는 4월 둘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된다. 특히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법대로 집행하려면 총회 차원에서 3월에 정기노회를 시행하고 있는 노회를 지도하여 노회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여 원칙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종 규정들을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법, 지켜나가는 규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8)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

노회는 특정 지역중심으로 조직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존 노회에 분립하여 새로 신설되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 노회에서 분리되어

분립된 노회는 신설노회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노회이다. 기존 노회의 회수를 공유할 수 없다. 새로 신설된 노회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교회헌법에 의하면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고 했다.³⁹⁾ 총회에 승인되기 전에 가칭 노회로 분립예배를 드리는데 총회에서 승인받기 이전은 노회로부터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기존 분립해 주는 노회 소속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2) 총회 정기위원, 실행, 상설, 특별, 선거관리위원회

(1) 정기위원

- ① 통계위원 2인, 원부서기 : 통계위원은 매년 4월 말일 노회상황보고 양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며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각 노회 통계 보고를 수합한다. : 공천위원은 각 상비부원을 총회 전에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② 공천위원은 각 노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절차위원 2인, 회장과 서기 : 절차위원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회원에게 배부 한다.
- ④ 지시위원 1인, 회장 자백 : 지시위원은 총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 ⑤ 흠석사찰위원 1인, 회장 자백 : 흠석사찰위원은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⑥ 천서 검사위원 3인, 원부서기 및 회록서기 :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

3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22장 제1조 제2항.

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⁴⁰⁾

(2) 실행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총회소속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교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은 중경총회장 중에서 약간 명을 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 ③ 정책위원은 각 노회 1인으로 하되 노회에서 선정한다. 임무는 ①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현의한다. ②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⁴¹⁾

(3)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 각 상설위원회는 ① 이단(사이비)파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② 통일준비위원회 ③ 이슬람대책위원회 ④ 총회역사위원회 ⑤ 교단연합교류위원회 ⑥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등이 있다. 성설위원회는 한 회기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된다.⁴²⁾

(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고 교단존립에 위해가 되는 등의 특별사안이 긴급을 요할 시는 본회 결의로 사안에 필요한 인원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⁴³⁾

(5) 선거관리위원회

총회는 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무, 공천위원장 등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은 15인으로 하되 당연직 5인을 제외한 10인을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지역구도에 맞춰 총대경력 6회 이상으로 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로 한다)⁴⁴⁾

3) 총회 총대(회원권) 효력 발생 시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주어진다.⁴⁵⁾ 노회가 총대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때, 총회 서기가 이를 접수할 때에는 총대의 법적 효력은 없다. 총대 후보자라 할 수 있다. 서기가 천서검사를 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회장(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부터 회원권이 주어진다.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였으나 총회장이 이를 승인하여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회원권이 주어진다. 개회선언이 없다면 아직 총회로 성립되

4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1항.

4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2항.

4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3항.

4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4항.

4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6조 후단.

지 아니하므로 총회 회원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는 것은 결국 총회장이 이를 근거로 개회선언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소집절차

집합체로서 단체는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집을 할 경우 결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제아무리 결의방법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된 소집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변명은 절차적 하자에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1) 총회 개회 공지 의무

총회는 1년에 1회 회집된다. 계속총회나 속회 총회는 가능하나 임시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를 언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⁴⁶⁾ 1주간 전이란 총회 개회 전 월요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회의목적 사전 공지 문제

모든 단체나 집합체 회의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목적을 공지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은 무효가 된다.⁴⁷⁾

4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7장 제22조.

47) 대법원 2005. 5. 18.자 2004마916 결정.

그러나 총회는 사전에 회의목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회의 안건을 전국 노회에서 청원과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하고 본회는 이를 승인할 경우 안건이 된다. 이렇게 상정되지 않는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즉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 즉 긴급동의안은 제외된다.

3) 개회 선언과 회순채택

개회 선언은 적법한 대표자, 즉 소집권자의 고유권한이다. 아무나, 아무렇게 개회를 선언하여 회무를 진행하면 안된다.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개회가 선언되어야 한다.⁴⁸⁾ 개회 선언은 회무진행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개회가 선언되지 않고 회무가 진행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없다. 대표자가 개회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는 자가 개회를 선언하면 안된다. 개회 선언은 회의 문을 여는 것이며, 문을 열지 않고서는 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개회를 선언한 후 총회장은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회무진행 순서에 대해 동의와 재청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회순채택이라 한다. 회순채택이란 의안 상정에서 심의와 의결 순서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미 공지된 회순에 대해 “공지된 회순을 임시로 받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의장은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결정하면 된다. 회순을 임시로 채택하였다면 공지된 회순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4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지편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회장에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변경, 연장 등을 결정하면 된다.

5. 총회 의사·의결 정족수

1) 의사정족수

일정한 안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는 일정한 회원이 참석하여야 총회 구성원(총대, 대의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의사정족수라 한다. 의결정족수는 결의 효력을 갖는 숫자를 의미한다. 의결시 출석회원이란 개회시 출석회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출석한 자만을 의미한다. 개회 이후 스스로 회의장에서 이탈한 회원은 출석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⁴⁹⁾ 또한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결의에 참여한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으로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⁵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라고 했다.⁵¹⁾ 의사정족수(개회 성수)는 ① 노회의 과반수, ② 목사총대 과반수, 장로총대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회될 수 있다.

정회하고 속회할 때에 속회 정족수 역시 개회 성수(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속회시 의사

정족수 확인을 생략할 수 없다. 반드시 회원 호명, 혹은 확인을 하여 정족수 여부를 확인해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개회·속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출석회원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속회시, 혹은 결의 당시에 출석회원을 생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출석회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의결정족수

의안을 심의하여 출석한 회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때로는 회원들간의 이견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만장일치만이 유일한 결의방법이라고 하면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단체의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단체의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체에서 일정한 회원이 찬성하면 결의된 것으로 하는 원칙이 규범으로 정하고 있다.

(1) 일반 결의 정족수

모든 집합체는 자치법규가 있으며 특정하게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투표수 과반수 등의 규정을 둔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이나 총회규칙에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정족수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한 의안에 대해 찬반으로 대립될 때에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엄격한 사안에 대해 출석회원

4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50) 대법원 1995. 11.21. 선고 94다15288 판결 등 참조.

5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12장 제3조.

의 과반수 찬성이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

(2) 헌법개정 정족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을 개정할 때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교리적인 헌법은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이 있는데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 총회가 공포한다.⁵²⁾

그러나 총회가 각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관례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인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절차를 유추적용한다. 먼저 총회에 개정안이 현의되어야 한다. 현의된 다음에 연구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개정안을 연구하게 한다. 연구 후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해야 한다.⁵³⁾ 이때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 부분 역시 규정에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총회가 적용한 것이 관례였다.

관리적인 헌법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은 전국 노회의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는 3분의 2 이상이다. 하지만 교리적인 헌법인 신조와 요리문답은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모든 노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그 다음 총회에서 채용한다. 전국노회의 과반수와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차이가 있다. 교리적인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⁵⁴⁾

5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23장 제1조.

5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23장 제3조.

(3) 총회규칙 개정 정족수

총회규칙 개정은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라고 규정한다.⁵⁵⁾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 청원안이 본회에 상정될 경우, 본회는 이를 총회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하여 본회에 제의해야 한다. 이때 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된다.

총회규칙은 총회의 자치법규로 총회 본회가 아니면 개정이 불가능하다. 본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개정을 규칙부나 혹은 총회임원회에 보내어 규칙부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여 교단지에 공고하면 개정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총회규칙 개정은 본회 현장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마치 교회정관을 공동의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당회에 위임하여 결의한다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과 같다. 이는 종교단체와 교회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례법리로 내놓은 강행법규에 대한 판시사항이다.⁵⁶⁾

3) 성수 유지원칙

총회는 의사정족수(개회 성수)에 의해 개회된 이후에 계속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회성수가 100명이라면 정회하고 속회할 때에 반드시 100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회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성수 유지의 원칙이라 한다.

5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23장 제2조.

5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부칙 제2항.

56)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2643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1796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총회 개회성수(의사정족수)가 목사 장로를 포함하여 과반수인 800명이라고 할 때 속회하여 표결처리 할 때 찬성 600명이고 반대가 100명이면(기권 무) 성수가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되었으므로 효력이 부인된다. 이를 의결정족수 하자라고 한다. 따라서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정회하고 속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성수유지원칙이라 한다.

6. 안건 상정방법

총회는 회무를 진행하면서 주요 안건을 결의하는데 원칙은 사전에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의안(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회무가 진행되면서 순간마다 안건을 내세워 결의하는 방식은 아니다. 총회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정된 안건만 결의한다는 대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노회의 청원과 헌의부를 통한 총회 상정

총회는 각 노회에서 청원과 헌의한 안건들이 총회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되어야 하며, 총회는 상정된 안건의 범위 안에서만 결의한다.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괄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청원과 헌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⁵⁷⁾ 각 당회는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는 이를 받아 총회에 헌의 및 청원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에 접수한다.

총회는 접수받은 하회의 각종 청원 및 헌의를 총회헌의부에 이첩하고 총회회무 전에 헌의부가

모여 심의하여 총회 본회에 상정하면 총회는 이를 받아 심의하여 결정한 후 총회가 파한 다음 하회에 통보한다.

총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반드시 총회 10일 전에 헌의부에 이첩되어야 한다. 10일전에 총회서기(총회본부)를 통해 헌의부에 이첩되지 않을 경우 총회 본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다. ‘총회 규칙’에 헌의부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기로 한다.)⁵⁸⁾

헌의부는 본회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서류 검토’권이 있다. 청원과 헌의건에 대한 성격에 따라 어느 부서로 이첩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그리고 어떤 의안은 당석에서 직결할 것과 “부당한 서류”는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한 의안에 대해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의부가 적당하지 못하여 기각할 경우, 본회에 이러한 이유로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본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청원(헌의)건은 청원자인 노회가 취하여야 기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회결의에 의한 총회 청원한 서류는 반드시 하회의 결의가 있

5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제12장 제4조.

5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어야 취하할 수 있다. 그런데 노회의 특정 인사들이 노회 결의와 무관하게 현의부에 취하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치리회를 무시하고 모독했다는 이유로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2)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총회의 의안은 하회인 전국 노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회에 현의나 청원사항을 결의로 확정된 다음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현의부는 이렇게 제출된 모든 청원 및 현의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에 내놓는다.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에 의해 총회 전에 절차를 통해 상정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는 대 전제에 따라 현의부를 통하지 않는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본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이다. 총회규칙은 다음과 같다.

현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⁵⁹⁾

총회는 긴급동의안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경서노회장 김종화씨가 질의한 총회시 긴급동의안으로 노회 분립의 건을 결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총회 규칙(제7장 23조)대로 하기로 하다”로 결의되었다.⁶⁰⁾ 여기서 당시 총회규칙 제7장 23조란 “현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3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총회 결의는 노회 분립은 긴급동의안으로 의안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총회와 노회 공무 중에는 원·피고간에 혹은 관계된 자들은 투서, 진정서, 긴급동의안 등 어떤 의견도 접수 불가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⁶¹⁾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현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노회가 소속이 안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라는 결의도 있다.⁶²⁾

3) 직전 총회에서 위임받은 각 부서 안건

총회 본회에서 각 부서로 위임한 건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 확정한다. 예컨대 “본 건은 신학부로 넘겨 연구케 하기로 하다”라는 등은 신학부가 1년 동안 연구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 총회는 허락, 기각, 수정 허락 등으로 결의하여 총회적 결의로 확정한다. 때로는 사회부로, 은급부로 넘겨 “처리케 하다”라는 결의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위임받은 부서의 무책임한 행위이다. 각 부서⁶³⁾는 총회로부터 어떤 연구와 처리를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6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6회 총회결의(2011)

6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결의(2014)

63) 총회는 21개 부서로 조직되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현의부 (5) 재정부 (6) 면려부 (7) 학생지도부 (8) 구제부 (9) 규칙부 (10) 고시부 (11) 농어촌부 (12) 군목부 (13) 노회록검사부 (14) 재판국 : 15인(목사8인, 장로7인) (15) 출판부 (16) 경목부 (17) 감사부 : 18인 (18) 은급부 (19) 순교자기념사업부 (20) 신학부 (21) 사회부

5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제8장 제29조.

6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0회 총회결의.

4) 직전 총회의 특별안건

총회가 특별한 안건에 대해 심리가 필요할 경우, 본회 현장에서 결의하지 않고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임의 형편에 따라 연구, 처리 등에 따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이를 승인, 기각, 수정 등의 결과를 확정하면 이는 총회적 결의가 된다. 특별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혹은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치부나 총회임원회는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총회 회의록 채택시 회의록에 그 위원 명단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예 위원 명단에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회의록 채택을 위임받은 총회임원회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위원은 한 회기로 그 직무가 끝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일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특별위원에게 처리권을 위임했을 때 그 처리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고 교단존립에 위해가 되어지는 등의 특별사안이 긴급을 요할 시는 본회 결의로 사안에 필요한 인원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했다.⁶⁴⁾

5) 총회임원회의 보고 안건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⁶⁵⁾ 그리고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

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⁶⁶⁾ 총회 본회가 총회임원회에 특별한 안건을 수임할 경우에 대해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총회 파회⁶⁷⁾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⁶⁸⁾ 총회 임원회에 위임된 사항으로 총회가 파회(폐회) 후에 ① 총회수임사항과 ②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③ 긴급한 제반 현안과 ④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되었다.

위와 같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안건에 대해 차기 총회에서 임원회가 보고를 한다. 이같은 보고를 승인, 기각, 수정승인 등의 형편에 따라 확정하면 이 역시 총회적 결의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후에 총회임원회의 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차기총회에서 재결의가 있을 경우, 후결의가 우선한다.

6) 상설위원회의 보고 안건

총회의 특별위원 가운데 상설위원회가 있다.⁶⁹⁾ 이는 1년 임기로 제한된 특별위원회와 다

6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3항.

6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3항 3).

6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8장 제24조(임원회).

67) 파회(罷會)란 폐회(閉會)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파회는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수 없는 개념이며, 폐회는 문을 닫아도 다시 열 수 있는 개념으로 총회를 파회라 하여 총회사무를 마치면 다음 연례회인 총회가 다시 회집될 때까지 임시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한다.

6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결의(2017)

6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2항.; (1) 이단(사이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

른 개념의 위원회로 총회의 파회와 상관없이 상설 상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상설위원회는 총회가 인준한 상설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운영되면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되어야 총회적 결의로 확정된다. 상설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규칙에 따라 연구 및 처리한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는 상설위원회의 보고를 승인, 기각, 수정승인 등으로 결의로 확정할 수 있다.

7. 의결방법

총회는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⁷⁰⁾ 소집절차가 하자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집절차는 적법하나 의결방법이 하자일 경우 역시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사전에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한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어깨너머로 배운 상식적인 지식이 아닌 법리적인 접근에 의한 지식이 필요하다.

1) 동의와 재청

본회가 토론하여 심의한 후 표결에 붙여 결의할 때 이미 헌의부를 통해 성안된 안건으로 제한된다. 즉석에서 특정 회원(총대)이 동의로 안건을 발의할 때 의장(총회장)은 “본 건은 헌의부를 통해 성안된 정식 안건이 아니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각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법지식에 문제가 있을 이를 토론에 붙여 논란이

되어 1시간 이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의장은 성안된 안건을 개회시 채택된 회순에 따라 본회에서 총대들의 토론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해 “제가 성안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요구한 것은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성안이 되어 심의를 위해 토론하고 있는 데 “제가 성안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회의법에 맞지 않다. 차라리 “의장, 제가 표결에 붙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표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한다.

의장은 의안 토론 후 표결에 붙일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붙일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든지, 아니면 회원 중에 이를 정리하도록 하여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결시 반대자가 없을 경우 의장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묻고 이의가 없을 경우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면 된다.⁷¹⁾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경우 거수 및 비밀투표 등의 방법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는 하지 않고 찬성하되 원안을 변경하여 결의하고 싶을 때 개의를 받아 원안과 개의 안을 표결에 붙이면 된다. 반대자들은 원안과 개의안에 찬성하지 아니하면 된다. 개의안 발의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개의안이 성립된다. 동의와 재청이 없으면 개의안은 자동 상실된다.

2) 표결 방법

의장(총회장)은 의결권과 표결권을 갖고 있다.⁷²⁾ 의장으로서 총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4) 총회역사위원회 (5) 교단연합교류위원회 (6)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70) 소재열, 『교회 표준회의법』(고양 브엘복스, 2019) 참조.

71) 우리들의 회의법은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는 형식이었다. 이의가 없을 경우, 만장일치 찬성인데 이런 요식이 필요하겠는가?

먼저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하지 않고 가부 동수일 때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하면 이중 투표가 된다.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고 했다.⁷³⁾

회장은 회원으로 하여금 회칙을 지키게 할 것과 순서대로 회무를 진행하며, 의논 후 신속한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회원의 발언권은 반드시 의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행사하게 하고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회원 간의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해야 한다. 회장이 표결을 위해 가부를 물을 때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하여야 한다. 회장은 매 사건의 결정을 공포하여야 한다.⁷⁴⁾

72)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항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제459, 613문답⑩참고)”

7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9장 제2조.

7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9장 제2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⁷⁵⁾

8. 총회의 직무와 권한

1) 총회 개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12년에 7개 노회⁷⁶⁾를 조직하면서 그 노회를 중심으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총회 총대는 각 노회의 7당회당 목사나 장로 각 1명씩의 비율(목사장로 동수)로 파송을 받아 총회를 조직한다. 총회는 총노회(the General Presbytery)를 의미하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성격과 명칭을 갖는다. 총회는 하나의 통일된 지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를 대표한다. 총회 총대들은 자신이 소속된 노회를 대표하고 노회에서는 지교회를 대표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⁷⁷⁾ 모든 교회의 대표기관이다.⁷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7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고.

76) ①경기, 충청(경충노회)(1911. 12. 4), ②황해노회(1911. 12. 8), ③남평안노회(1912. 2. 15), ④북평안노회(1912. 2. 15), ⑤함경노회(1911. 12. 20), ⑥경상노회(1912. 1. 6), ⑦전라노회(1911. 10. 15) 총회 조직 당시 목사의 수는 총 128명, 장로는 총 225명이었다.

77) J. A. Hodge, 『교회 정치문답 조례』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제469문.

78) J. A. Hodge, 『교회 정치문답 조례』 제477문.

연합 관계를 총찰”⁷⁹⁾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⁰⁾ ‘파회’가 아니라 ‘폐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라고 하여 이 부분에서도 파회가 아니라 폐회라고 한다.⁸¹⁾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와 같이 치리회이다.⁸²⁾ 총회 회원(총대)은 “각 총회 서기가 [본회에서]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라고 했다.⁸³⁾ 총회 개회시에 주어진 회원권이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다. 총회장 총회 폐회시에⁸⁴⁾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줄로 알며”라고 한 후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라고 폐회 의식을 갖는다.⁸⁵⁾ 폐회의식은 모임을 마치고 흩어진다는 ‘산회(散會)’ 한다. 이 산회, 즉 산회를 파회(罷會)라고 한다.

이러한 총회를 J. A. Hodge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469문 8항에서 “총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다. 총회는 다음 회기에 소집될 때까지 파회한다”라고 원문에서 번역 했다.⁸⁶⁾ 이같은 하지의 책을 번역한 곽안련 박사가 번역하여 편집한 『정

치문답조례』 제629문 (8)항목에서 “총회는 상개(常開)하는 회가 아니니 매년 폐회시에 아주 해산하고 다음 회는 신파총대(新派總代)로 회를 조직하느니라. 그 중에 전회 출석원으로 재파(再派)된 자가 있을지라도 이는 개인의 일이오니 회는 매년 새로 성립되느니라”로 번역했다.⁸⁷⁾

곽안련 목사가 번역한 이와 같은 내용을 박병진 목사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익년 총회를 새로 회집한다”라고 역술했다.⁸⁸⁾ 곽안련 목사와 박병진 목사는 J. A. Hodge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의 글에 없는 자신들의 주장으로 편집하여 총회를 마치면(파회) 총회가 해산되고 다음에 새로운 총대로 총회를 조직한다는 주장했다. 이같은 개념은 원래의 J. A. Hodge는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의 제469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곽안련 선교사와 박병진 목사가 원래의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없는 총회의 해산과 매년 새로운 총회 조직이라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정치문답조례』이름으로 해석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어디에도 총회를 ‘상설기관이 아니다’라거나 ‘비상설기관이다’라는 규정한 내용이 없다. 단지 J. A. Hodge의 『교회법이란 무엇인가?』를 역술한 『정치문답조례』에서 총회를 비상설기관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해산, 매년 새로운 총회 조직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를 다른 치리회, 즉 상설기관인 당회, 노회와 같이 치리회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 직무로 “산하 각 교회 간

7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9장 제4조.

8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8장 제3조.

8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2장 제7조.

8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8장 제1조.

8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2장 제6조 후단.

8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2장 제7조.

8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2장 제7조.

86) J. A. Hodge, 『교회 정치문답 조례』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제469문 제8항.

87) J. A. Hodge는 『정치문답조례』 곽안련 편집 제429문.

88) J. A. Hodge는 『정치문답조례』 박병진 역술 제429문.

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⁸⁹⁾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⁹⁰⁾라고 규정한다. 총회가 파한 이후에 총회재판국을 상비위원 제도로 운영된다. 이같은 총회 재판국을 ‘상설 재판국’이라 한다.⁹¹⁾

이상과 같은 개념을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총회가 파하면 총회 총대는 없어지고 동시에 총회도 없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 개념을 비상설기관(치리회)이라고 말해야 하는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합동)은 그 어디에도 비상설기관(치리회)이라거나 총대는 총회가 파하면 없어진다거나 총회 역시 없어진다고 말한 성문 규정은 없다.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단체법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이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이다’라고 하면서 해석할 뿐이다. 문헌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100명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회는 그러한 해석으로 운영된 곳은 아니다. 총회가 당회, 노회와 같은 치리회로서 당회와 노회를 상설치리회라고 말하면서 총회만이 유독 비상설 치리회라고 해석한다.

존 코튼(John Cotton)의 교회론은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노회와 총회를 비상설기관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회중교회 정치는 신약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역

교회의 평등과 자율을 이유로 회중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했다.⁹²⁾ 그러나 장로정치나 회중정치가 다 성경에 가까운 제도라는 데는 이의를 달지는 않았다.

2)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① 치리회와 전국 교회의 모든 사무 총찰 ② 전교회와 각 치리회의 연합관계 총찰 ③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각종 헌의와 청원 처리 ④ 소송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 ⑤ 각 노회록 검열 ⑥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하는 등의 직무를 갖고 있다.⁹³⁾ 총회는 노회를 거쳐 전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에 각 의안이 상정되면 총회는 모든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처리 과정에서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다스리며, 교회에서 모든 논쟁을 결정한다.

3)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① 교회헌법 해석권과 쟁론 판단권 ② 노회의 설립권(합병, 분립, 폐지 등 포함)과 전국 교회 통솔권 ③ 교회 분열 방지를 위한 쟁단(爭端) 진압권 교회의 기록성 유지 및 계도(計圖)권 ④ 교회 재산 쟁론에 대한 분쟁 원인 판결권 ⑤ 위원회 설치권, 신학교와 대학교 설립권 ⑥ 총회 소유 재산 관리권 등이 있다.⁹⁴⁾

92) 오덕교, 『청교도와 교회개혁』(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4), 254-55.

9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

9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

8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4조 후단.

9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4조.

9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I. 권징조례 제134조.

4) 총회 산하기관의 법적 검토

단체는 그 운영에 관하여 스스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조직을 결성하며,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는 자신의 목적에 합치하는 조직을 스스로 형성하고 이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교단체이다. 종교단체의 준말로서 기독교는 교단, 불교는 종단이라고 한다. 총회는 산하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기관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가 있어서 종교단체와 일반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이 있다.

(1) 산하기관의 정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산하 여러 기관을 갖고 있다. 총회 산하기관으로 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총신대학교) ② 기독교신문사 ③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④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 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GMS) ⑥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

5조.;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성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全教會)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仁愛)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議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한다.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設置)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단 ⑦ 사단법인 교회자립개발원 등이 있다.⁹⁵⁾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총회가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⁹⁶⁾ 그러나 총회규칙은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고 하여 “목사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라는 규정에 적용하고 있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⁹⁷⁾ 교단지인 기독교신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관할하에서 운영되고 있다.⁹⁸⁾

다음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다. 교회헌법에는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한다.⁹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유로 재산을 관리하려면 교회처럼 법인 아닌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회는 이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재단법

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9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5조 제5항.
9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1항.;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 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하되 법인이사는 총회총대이어야 하며(단, 목사의 경우는 운영이사이어야 함)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운영이사는 21 당회 이상 노회 1명).”
9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2항.; 기독교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그리고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본 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감당해야 한다.
9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5조 제6항.

인'을 설립인가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¹⁰⁰⁾

총회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은급 사업을 관장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이 있다.¹⁰¹⁾ 이 은급재단은 본회의 은급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단체)으로 운영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가 있으며 이 선교회는 "본 총회의 선교 사업 실행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¹⁰²⁾ 또한 총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 관장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단'이 있다.¹⁰³⁾ 마지막으로 본 총회 내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되 본 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교회자립개발원이 있다.¹⁰⁴⁾

정리하면 총회 산하 기관은 재단법인이 2개, 학교법인 1개, 사단법인 1개, 법인 아닌 사단 1개 등이 있다.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이 법인은 국가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국가의 법령 속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 세계선교회는 국가의 허가가 아닌 총회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2) 국가 법령에 의한 기관과의 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국가 법령의 단체법인 법인론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고 인정된다.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되지 않음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에 의하지 않는 단체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의 법령 속에서 모든 행정이 집행된다. 총회가 교회처럼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사한다.¹⁰⁵⁾ 그 법인의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게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있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다. 재단법인은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技藝),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복지법에 의한 복지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총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회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3항.;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은 본 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10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4항.

10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5항.

10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6항.

1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4장 제13조 제7항.

105)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유지재단), 재단법인, 은급재단, 복지재단,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가 있다. 일단 국가법령에 의해 법인화했다면 총회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단지 법인 이사회에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전제요건으로 총회의 인준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회 인준과 승인이 없는 경우 다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된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 결의 전제요건 없이 총회 자체 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이는 법인에게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제15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은 총회에 있다.

제16조(인준권)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¹⁰⁶⁾

위와 같은 총회규칙에 의해 2008. 9. 25.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해임하기로 제93차 총회결의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했다.¹⁰⁷⁾ 총회

10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2021), 제5장 제15조, 제16조.

107)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

가 “이사취임승인취소 의미의 해임결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철회한다는 내부적 의사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내용을 학교법인에 알려 학교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총회규칙상의 이사취임승인권은 근거로 피고에게 이사해임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피고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총회가 재단법인 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총회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사 15인이 법인 정관에 의해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인 정관에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¹⁰⁸⁾ 총회 승인이 없을 경우 정

관 제20조 제2항은 “임기 전의 이사회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의 해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고 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학교법인에 하여 그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자가 총회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6.자 2009카합378 결정, 2009라579 가처분이의).

108)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제6장 제29.

관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총신대학교 법인과 은급재단, 복지재단 등의 법인 정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법률행위를 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경험한 바 있다.

(3) 전국 교회에 대한 총회의 구속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이다. 이는 전국 교회의 모든 입법·행정·사법의 최고회라는 의미이다. 총회는 통일된 지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를 대표한다. 전국 장로회 모든 교회의 최종적인 판단자이다. 총회만이 교회헌법(교단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 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총회만이 교단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 모든 연합된 교회를 결속시키며, 다른 교단과의 일치와 조화, 그리고 교류를 대행한다.

교회와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법리로 확충되었다.¹⁰⁹⁾ 그러나 교회 자치법규(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될 때에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일하

고 판단한다.¹¹⁰⁾

따라서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였을지라도 지교회와 교단은 계약관계이므로¹¹¹⁾ 지교회 정관을 교단이 무효화 시킬 수 없으며, 개정을 명령할 수 없다.¹¹²⁾

9. 총회 입법·사법·행정권

1) 총회의 입법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교회의 최고회이며,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총회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인 ‘총회규칙’이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전국 노회와 교회에 적용된 ‘교회헌법’이 있다.

총회의 자치법규인 ‘총회규칙’은 총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총회는 ‘총회규칙’이란 자치규범을 갖고 있다.

‘교회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별칭으로 ‘장로회 헌법’ 혹은 ‘교단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을 ‘총회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교회헌법’은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11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11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112)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7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892 2020. 11. 27. 각하판결, 대법원 2017다232136 2019. 11. 28.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004 2017. 04. 20. 소송종료선언.

10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의 자치법규이다. 이 자치법규인 ‘교회헌법’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이같은 ‘교회헌법’에 대한 입법이나 변경은 총회의 결의와 전국 노회의 수의에 따라 총회가 공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규칙’이나 ‘교회헌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자치법규로서 제정이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총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단체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법리이다.¹¹³⁾

이같은 법리에 의하면 ‘총회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이므로 반드시 총회 본회 현장에서만 변경되어야 하며, 총회가 총회 규칙부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변경한 행위는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사유가 된다. 이같은 이야기는 교회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변경결의하지 않고 당회에 위임하여 변경하는 행위가 다 무효인 것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대한 종교단체(교단)의 자치법규인 헌법의 변경은 두 가지 측면을 충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총회가 절차에 따라 헌법변경을 결의하고 이를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였을 때에 총회가 공포하므로 헌법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헌법에 오낙자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헌법은 변경절차에 의해 총회가 공포하였으므로 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하는 행위는 헌법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위원회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교회의 ‘교회정관’, 노회의 ‘노회규칙’, 총회의 ‘총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회헌법’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는 공동의회, 노회의 노회정기회나 임시회, 총회는 총회 본회에서 변경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교회정관 변경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노회규칙 변경을 임원이나 임사부(혹은 정치부), 혹은 개정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총회규칙변경은 규칙부나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변경할 경우는 다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 노회, 총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됨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자치법규는 총회 결의의 전권사항에 해당된 강행법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 가는 것만을 문제 삼지 말고 종교단체가 바른 법리를 이해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실천과 실천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총회의 사법권

(1) 사법권 제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을 갖고 있으며, 그 헌법은 교리편과 관리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리적인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에 구성원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장로회의 교리적인 입장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성원의 지위가 거절된다.

교리적인 부분 외에 교회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정치편과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있다. 이같은 관리적인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사법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편에서는 장로회의 3심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권징조례는 법원의 관할과 재판절차를 말하고 있다. 예배모범은 판결을 결과

113)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 202643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1796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를 어떻게 집행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법권은 '권징'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교회의 안녕과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다. 칼빈이 지적한 대로 권징의 필요성은 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다른 기독교인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권징의 최종 목표는 악한 자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법권 행사를 위해 가장 먼저 범죄의 혐의에 대한 소송의 절차이다.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개인이 고소할 경우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에 재판한다. 또한 고소고발은 없지만 치리회가 처벌할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한 경우에 재판한다.

소송을 위해 고소나 고발, 기소는 적법한 형식이 있다. 그러한 형식에 따라 소장이 접수되어야 한다. 문제는 소장의 형식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이를 거부하여 반려할 것이 아니라 보정(補正,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잘못을 바로잡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소장을 반려해 버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소고발장, 기소장의 형식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본 교단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이점이라 본다. 로비를 받고 조그만한 하자만을 찾아 이를 반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는 교단총회의 비극이다. 이를 정치교권이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국원들이 어느 일방에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한다. 원고 측에 로비

를 받은 경우, 혹은 원고를 돕기 위해 무조건 피고가 잘못했다고 억박지른다. 모든 법을 피고에게 적용하여 범죄로 구성한다. 반대로 피고측의 로비를 받는 경우, 무조건 원고의 주장은 위법이라고 한다.

재판은 법리대호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복잡한 소송 사건을 심리할 가장 기초적인 법리개념도 없다.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할 뿐이다. 엄격하게 법규를 통해 심리하는 재판절차가 무색할 뿐이다.

심리하여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은 애매모호하게 작성한다. 판결문 갖지 않는 판결문을 내놓는다.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매년 동일한 재판국의 판결이지만 각각 다 다르다. 적용하는 법리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다. 그러니 고무줄 판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 법원으로 간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법원은 로비에 의해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본 교단의 재판에 대해 현재 법원에 소송으로 계류 중인 것이 어디 한 두 사건인가?

민법과 형법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교단헌법에 권징조례가 있다면 권징조례 소송절차법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권징조례만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현대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재판에 너무나 로비에 약하다. 그래서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한 소송절차법을 만들어 소송사건의 혼란을 피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법을 제정할 경우, 그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심리와 판결이 진행이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징조례 소송절차법>을 제정하여 교단총회의 사법권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 교단의 소송 사건들은 법원으로 이어져 총회재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될 것이다. 이는 본 교단의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2) 상설 재판의 의미와 최종심

총회재판국을 상설재판국이라 한다.¹¹⁴⁾ 총회에 상고장이 접수될 때에 걸치하는 재판국이 아니라 총회 회기 1년과 상관없이 항상 재판국이 상비위원제로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상설재판국이라 한다. 즉 총회 재판국은 1년 기간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비위원 체제로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상설재판국이다.

총회재판국은 최종심으로 마치 대법원과 같다. 원심지리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할 때에 총회 재판국은 다음과 같은 것 중에 하나로 판결한다.

권징조례 제99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중

낭독한다(당사자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 (2)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거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 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총회총재판국은 법률심으로 첫째,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취소란 상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변경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원심의 확정판결에 대해 형량 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원심인 하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하여 결론을 맺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파기자판과 같은 개념이다. 셋째는 갱심이다. 원심지리회(재판국)의 판결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 파기환송과 같은 개념이다. 총회재판국이 갱심판결을 할 때에는 하회 판결을 할 때는 하회 판결의 잘못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하회는 총회판결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하여 기속되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¹¹⁵⁾

1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I. 권징조례 제 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115) 소재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

(3) 재판국 구성과 특징

총회재판국(상설)은 상비위원제로 총 15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할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파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116)

재판국장은 목사총대여야 하며 장로총대는 재판국장이 될 수 없다.117) 권징조례 제69조의 재심에 있어서 수소재판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현의 한 헌법 권징조례 제69조의 ‘수소재판회’는 노회도 될 수 있고 총회재판국도 될 수 있는지 또는 항상 총회 재판국인지 또는 그 밖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118). 헌법에 논란이 되어 질의했는 데

25. 715.

11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VI. 권징조례 제 134조.

117) 제99회 총회부터 총회재판국장 장로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장로가 재판국장을 할 수 없다) 하기로 가결하다(제99총회결의, 2014).

11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 결의(2014). 참조.

총회는 “헌법대로”라고 애매모호하게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징조례 제69조의 ‘수소재판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총회를 수소재판회로 하여 재심을 인정하기도 했다.119)

또한 총회재판국원을 겁박하는 개인 및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 천서 제한 및 행정제재하기로 결의했다.120) 또한 다음과 같은 선서내용을 확정했다.

상비부장재판국원/감사부원 선서 : 본인은 대헌예수교장로회 총회상비부장, 재판국원, 감사부원으로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당한 청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며 만일 부정에 연루되는 일이 있을 시 총회의 모든 공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선서합니다.121)

총회재판국의 교리재판은 가급적 신학부에 의뢰하여 그 해석에 근거해 재판하든지, 총회재판

119) 부산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나53435 판결(변직처분등무효확인등, 확정일 2017. 9. 29.) ; “이 사건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69조 규정은 ‘수소재판회’에서 재심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소재판회’의 의미가 반드시 피고 노회 주장처럼 원심재판국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단 헌법 해석의 최종 재판국인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재심판결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해석하여 재심판결을 한 것을 두고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상의 잘못을 두고 정의 관념상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12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결의(2018); “재판국장 허은 목사가 재판국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67~390쪽)대로 받고,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또한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6조 및 제98회 총회결의에 의거 총회재판국원을 겁박하는 개인 및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 천서 제한 및 행정제재를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결의(2013).

국 자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를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²²⁾ 이같은 긴학부에 위임하여 신학부가 연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된 결의는 노회 재판국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청원 자체가 노회재판국에 대한 문제였다. 또한 재판국이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기도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했다.¹²³⁾ 고소장이 없을지라도 치리회가 재판의 필요성이 있을 때 먼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별도로 재판국원을 선정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3) 총회 파회 후 상설재판국 이첩 제도

총회 상설재판국에 소송건에 대한 이첩은 매년 9월 총회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첩한다. 총회 상설재판국은 총회로부터 이첩해 주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총회시 1년에 한번 접수된 후 헌의부를 거쳐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되어 처리되어 왔기에 재판제기로부터 최종판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총회가 파한 이후 다음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총회 상설재판국에 이첩하는 제도를 총회 결의(총회규칙)로 확정된 절차법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총회 헌의부는 ‘헌의’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헌법에 따라 총회에 헌의나 청원사항을 검토하여 총회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헌의부가 안건을 상정하며 본회는 이에 대해 승

인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헌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면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결의할 수 없다.

총회는 권징치리(재판)의 특별한 절차를 갖고 있다. 총회가 파한 이후의 권징재판(소송건)에 대해서는 권징조례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사안을 총회 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총회가 파한 이후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은 그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헌의부 실행위를 통해 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권징조례에 없는 내용을 총회결의로 시행한 헌 제도는 하급심(1심과 2심)을 거친 소송건에 대해 총회 서기부에 접수되면 이를 헌의부에 이첩한다(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이에 실행위원회의 심의하여 이를 재판국에 직접 이첩하는 규칙이다. 즉 총회는 헌의부로 하여금 직접 상정권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94회 총회에서는 1, 2심을 거친 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총회규칙을 개정했다. 그런데 “1, 2심을 거친 소송 건”은 애매모호했다. 목사의 1심재판은 노회이고, 장로와 교인의 1심은 당회이다. 관할이 다르다. 목사에 대해 1, 2심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총회는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급심을 거친 건’으로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목사와 장로(교인포함)에 대한 모든 소송건은 ‘하급심’인 용어로 변경하여 하급심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총회 규칙은 ‘하급심’으로서 당회 혹은 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심의하여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조직하여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만 헌의부를 통해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직접 이첩(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회 헌의부 실행위는

12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결의(2020).

1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총회결의(2009) ; “서대구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최성철 씨 외 4인의 상소의 건은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한 후 재판국에서 기소위원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재판국 구성은 고소인(원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재판국이 국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구성한 일과 기소위원이 재판을 하고 판결에 참여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처리하고.”

하급심인 재판 판결문이 없는 소송건은 차기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급심인 판결문이 있는 소송건에 한해 헌의부 실행위로 이첩한다.

그렇다면 하급치리회인 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고 총회에 위탁한 위탁건은 서기, 헌의부, 상설재판국으로 이첩하는 절차를 거치면 안된다. 이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 일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판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모 노회의 위탁판결에 대해 총회결의(제94회 총회)와 총회규칙(제7조 2항, 규칙부규정)에 의해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권한으로 총회재판(상설)국에 이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그러나 헌의부의 실행위는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을 총회규칙부에 의뢰했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헌의부 실행위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리고 총회가 파한 이후에 해석의 권한이 없는 규칙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헌의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헌의부 실행위가 총회규칙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통합측 규칙부는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여 총회가 파한 이후에 규칙부가 총회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합측과 본 교단은 다르다.

본 교단은 총회가 파한 이후에 헌의부에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관련 규정이 없다.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말

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라고 규정한다. 헌의부 자체적으로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총회 본회에 “연구, 심의,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총회 헌의부 실행위는 제94회 총회 결의의 상설재판국 제도와 총회 규칙의 하급심, 소송건 등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문의하려면 차기 총회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규칙부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에 의해 처리하려는 것은 본 교단의 사법권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의부 실행위는 왜 총회와 총회 산하 많은 분야에서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시점

판결확정은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아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승인결의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된다.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사법제도에 있어서 판결확정은 총회재판국이 판결하는 시점이 아닌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승인할 때에 확정판결이 된다. 그러나 통합측은 총회재

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확정판된다. 이 점은 통합 측과 합동측이 다른 점이다.

3) 총회의 행정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입법·사법·행정의 최고회이다. 최고회인 총회는 행정총회로 모여 입법·사법권을 행사한다. 이 총회의 원칙은 사전 적법절차에 따라 안전이 상정되지 아니하면 결의할 수 없다. 직전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역시 안전으로 채택되어 결의한다.

총회는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안전”으로(정치 제12장 제4조) 제한된다. 서기는 합법적인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했다(총회규칙 제2장 제7조 제3항). 모든 청원 및 헌의사항은 서기가 헌의부에 이첩한다.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청원 및 헌의사항이 헌법개정건인가, 혹은 소송건인가를 구분하여 관련 부서에 배정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본회가 이를 받을 때 안전이 상정된다.

헌의부가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별도로 본회에 보고하고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총회 행정권에 대한 행정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첫째, 헌법상 안전은 행정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헌법변경을 청원하였을 때 변경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유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헌법상 내용에 대해 행정결정을 청원하였을 때에 “헌법상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오며”라고

본회에 보고하면 된다. 예컨대 70세 정년을 75세로 해 달라는 청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면 행정결의로 변경할 수 없다.

노회는 아무렇게나 청원 및 헌의하면 안된다. 헌법변경 사항을 행정결의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노회의 권위 문제이다. 노회가 헌의를 할 때에도 정확한 원칙과 법리를 따라야 한다.

또한 헌법위원회 설치건에 대한 헌의는 헌법상이다. 헌법위원회 설치 청원건은 이미 총회가 연구하여 부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편법을 부렸다. 정치부가 심의하여 본회에 내놓은 것은 청원사항인 ‘헌법위원회’를 ‘헌법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하여 보고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상이다.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를 청원했다면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헌법상으로 기각해야 한다.

둘째, 교회헌법, 총회규칙, 선거관리규정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이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인 자치법규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총회에서 변경 및 공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총회 이외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변경은 교회헌법, 총회규칙, 선거관리규정에 반드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본교단의 자치법규이므로 이는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헌법변경에 해당된 청원 및 헌의에 대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각시키면 그만이다. 특히 본회의 전권사항인 총회규칙이나 선거관리규정을 “규칙부가 변경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면 기독교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갖는다”는 위임결의는 총회의 전권사항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총회는 결의 만능주의로 가면 안된다.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총회가 혼란이 임한다. 총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임한다.

셋째, 총회의 사법권 절차에 대한 행정결정이다. 소송건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총회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다. 총회 사법권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시점이 확정판결이 아니라 총회가 이를 채용한 결의를 하였을 때에 확정된다.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문제는 총회가 상설재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설재판국이란 총회 재판국 외에 별도의 상설재판국 제도를 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총회 서기부에 접수된 소송건 중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건은 서기가 15일 이내에 총회헌의부에 이첩하고(총회규칙 서기 직무 참조) 총회헌의부는 이첩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판국에 이첩해야 한다(총회규칙 헌의부 직무 참조).

그런데 여기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건에 대해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로 개정하여 현재의 총회규칙이 됐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에 이첩할 목사에 대한 소송건은 반드시 하급심(총회의 원심)을 거쳐야 한다. 즉 노회 재판국 판결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에 의하지 않는 목사의 소송건은 총회 상설재판국으로 이첩할 수 없다.

예컨대 노회의 위탁판결 등은 하급심을 거치지 않는 소송건이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일반재판으로 이첩되어야 한다. 총회규칙에 열거된 규정 그대로 이해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열거된

규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을 담당자(서기, 혹은 헌의부)가 열거된 규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므로 시행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 매년 누가 서기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권징 절차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넷째, 상호 모순된 총돌 결의가 문제이다. 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동일하다”라고 결의했다(제100회 총회). 그런데 또다시 “임시당회장은 사법권이 없다”고 결의했다(제103회 총회). 또다른 총회에는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없다”고 했다(제104회 총회).

이러한 결의들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임시당회장은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동일하다”로 결의했어야 옳았다. 특히 임시당회장(임시 대표자)의 결의권 제한으로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없다는 제104회 유권해석은 전형적인 흠결이었다.

정치부가 100년 동안의 총회 유권해석을 섭렵하고 헌법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한 이러한 불합리한 흠결은 계속될 것이다. 제105회 총회에서 처럼 미조교회 담임목사는 시무목사가 아닌 것처럼 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총회 본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총회임원회에서 정치부와 소통으로 바로 잡았다고 한다. 이것도 총회결의를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면서 본회 결의내용과 다르게 채용했다는 흠결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대 선배들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하오며”라고 답변한 이유가 이러한 총돌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다섯째, 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과 정치부안이 상호 모순된 충돌 문제이다. 동일한 청원은 이미 특별위원회, 혹은 상설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안을 동일하게 또다시 현의하여 정치부로 넘어간 사건들이 있다. 문제는 정치부가 심의해서 내놓은 안과 특별위원회 및 상설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내놓은 안이 서로 충돌되게 본회에서 결정된 경우, 정말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특정인에 대한 이단성 여부에 대해 이대위에서 1년 동안 위임받아 연구하여 보고서에 기록되어 본회에 보고되기 전에 동일한 특정인의 이단성을 정치부가 또 이대위로 넘기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정치부는 '이대위의 보고와 병합 처리하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보고해야 옳다.

특별위원회나 신학부에서 1년 동안 연구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부 노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또 현의한다. 현의부나 정치부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별도로 본회에 특별위원회나 신학부 보고와 상충되게 보고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결의가 이루어져 "결의된 것도 아니고 결의되지 않는 것도 아닌" 식의 모순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제105회 총회에서도 있었다.

매년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총회장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현의된 안건이 100년 총회역사 가운데 어떻게 결의되었으며,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현의 내용과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보고내용 전체를 사전에 숙지하여 상호 충돌이 없도록 했다. 이런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총회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퇴가 총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총회결의를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결의를 하여 또다시 유권해석을 해야 시행할 수 있는 결의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결의의 객관적 문장이 요구된다.

10. 총회의 사단성 社團性

대한예수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회의체로서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회가 정례회로 회집한 후 폐회되면 임시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회라는 회의체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구성원인 1년 단위로 회원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단체의 실질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단체로 존속한다.

총회재판국이 상설재판국이라 할 때 임기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 재판국은 소송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만 구성된 재판국이므로 이를 비상설재판국이라 한다. 여기서 비상설이란 문제가 있을 때에만 구성된 것을 의미할 때 그렇다면 총회는 비상설기관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회는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개최된 총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는 회원의 변동은 있지만 항상 존재한 치리회이므로 이를 비상설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매년 9월 총회의 회원권으로 부여된 총대가 회무를 마치고 폐회(파회)하면 총대의 회원권이 종결되고 소멸된다는 개념은 규정은 현 교회헌법으로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총회가 비상설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총회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법인격이 없는 법인 아단 사단으로 본다. 이는 교회와 노회와 똑같은 개념의 단체법이다. 이는 교회나 노회, 총회 모두가 단체로서 자치정관에 따라 법률행위를 인정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¹²⁴⁾ 총회 소유재산 관리는 '재단법인 대한

12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정치 제12장

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총회는 1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다. 이 재정은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의 재산이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의 재산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는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하여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총회를 단체법에 의해 자치법규(총회규칙)를 좇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결국 매년 9월 총회가 파하면 총대와 총회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소멸론은 타당하지 않다.

II. 총회 파회와 회의록

총회가 회무를 마치는 것을 교회헌법은 '폐회'라 한다.¹²⁵⁾ 사실 총회는 '폐회가 아니라 파회이다'라는 말도 모순된 말이다. 총회를 폐회라 하되 그 폐회의 성격을 파회로 설명할 뿐이다. 총회 회무를 마치는 데(폐회) 다시 문을 열 수 없다는 의에서 파회 성격을 갖는 폐회라 한다.

1) 파회와 폐회

총회는 계속총회는 가능하나 임시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를 마치면 다시 문을 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파회(罷會)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회는 일정하게 정해진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임시회가 있다. 노회는 닫았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폐회(閉會)라 한다. 폐회시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총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허무는 일로 주의가 요망된다.

제105회 총회¹²⁶⁾

□ 잔무 처리 위임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제104회 총회¹²⁷⁾

7. 잔무 처리 위임

총회서기 정창수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고영기 목사가 파회 후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제103회 총회¹²⁸⁾

14. 잔무 처리 위임

총회장이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김장교 목사가 파회 후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제102회 총회¹²⁹⁾

제5조 제6항.

1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IV. 정치 제12장 제7조.

126)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

127) 제104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128)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

10. 잔무 처리 위임

파회 동의와 재청을 받고, 회의록 채택과 긴급한 제반 현안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101회 총회¹³⁰⁾

6. 잔무 처리 위임

파회 동의와 재청을 받고, 총회보고서 수록 내용 중 미보고 사항과 그 외 미보고 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여 받을 것과, 회의록 채택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100회 총회¹³¹⁾

5. 잔무 처리

총회산하 기관, 연합기관 미보고 기관은 서면보고 받기로 하고, 회의록 채택 등 잔무는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제99회 총회¹³²⁾

• 잔무 처리

모든 잔무처리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의 역대 총회 폐회(파회)에 관한 회의록 채택에 의하면 제102회 총회까지는 역대 총회의 법통성에 의해 파회시 결의가 잘 되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103회 총회는 김장교 목사가, 제104회 총회는 고영기 목사가, 제105회 총회는 오인호 목사 파회 직전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한결같

이 “회의록과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그동안의 총회 법통성을 거부하고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를 총회임원회에 위임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의 이런 발언은 법적 권한이 없다. 이는 헌의부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가 심의하여 표결로 처리할 안건을 발언자가 임의로 안건을 발의하여 회의록에 채택되었다는 점은 장로회 정치원리와 헌법, 총회규칙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제104회 총회에서 고영기 목사가 제103회 총회와 제105회 총회에서와 같이 똑같은 발언을 했지만 제104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임받은 총회임원회는 이는 위법적인 발언이므로 적법한 발언인 “파회 후에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로 채택되었다.

오로지 제104회 총회임원회만이 적법한 법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총대 중에 해당 총회장의 최측면의 도우미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법적인 발언으로 잘못된 회의록에 기록되게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2) 잔무의 성격

총회를 마치면 보편적으로 “회의록 채택과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파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여 결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임원회에 위임한 잔무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다.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건은 자동 상실된다. 적법 절차에 의해 하여야 하는 일, 예컨대 회의록 채택 같은 것을 잔무라 할 수 있다. 본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위임된

129) 제102회 총회장 전계현 목사
130)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131)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
132)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

건은 잔무가 아니다. 잔무 중에 총회 결의 내용을 공지하고 통지하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회의록 채택과 원칙

역대 총회는 회무 기간 중에 매일 회의를 마치면서, 혹은 회무를 시작하면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회의록 채택이었다. 현장에서 회의 결과를 기록한 내용을 확정하여 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근래에 총회는 총회가 파하면 회의록 채택을 총회 임원회에 채택 권한을 위임한다.

문제는 총회임원회에 원칙에 충실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준법정신에 투철하지 않거 법적 개념이 모호한 임원들이 총회결의에 반한 내용으로 회의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차기 총회에서 반드시 수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4) 채택된 회의록 공지 의무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였다면 이를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회의록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총회를 마친 훨씬 후에도 무엇이 결의되었는지 확정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총회는 과거 60년대와 같은 행정업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총회가 마친 이후 10일 이내에 채택된 회의록은 공지되어야 한다.

총회가 미개한 단체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¹³³⁾

12.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등에 대한 용어 정립은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지교회를 통털어 ‘대한예수교장로회’라 한다. 따라 1912년 제1회 총회에 소는 모든 지교회 앞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회 정치와 교리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서인지 이 헌법이 ‘총회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른 용어개념에 대한 오해이다.

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어야 하며, 개회 되기 전에 안건이 어떻게 본회에 접수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결의를 할 수 없다. 특히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의결시 적법한 의결방법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총회 회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정기회가 있고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각각의 임무와 직무,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본래의 기능과 직무에 한계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적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총회가 혼란을 겪거나 권력을 남용할 때 전국 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에 빠진다. 총회는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회의 정통성과 전체성은 반드시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13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항.

서면결의 법령과 판례법리

당회와 공동의회 서면·위임장 결의 방법을 제안하며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1. 서론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¹⁾ 교회,²⁾ 노회, 총회는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³⁾ 법인 아닌 사단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된다.⁴⁾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되므로 사단법인의 서면결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에도 유추적용된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실무책임자가 형식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사들을 찾아가 도장을 받아 회의록을 완성한 경우, 이를 이사회결의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가 있다.

이사장과 실무책임자가 이사 개개인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그들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을 받았을 때 그 효력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서면결의로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서면결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⁵⁾

1)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장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한도거래약정 체결시 이사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4)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대여금]공2005.7.15.(230),1117]

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실무책임자가 형식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들을 찾아가 도장을 받은 것이므로, ○○신흥이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행위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무효인지에 대한 사건이었다.

2) 판례 쟁점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사들에게 찾아가 도장을 받은 행위가 이사회 결의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3)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단⁶⁾

원심의 판결은 이렇다. ○○신흥 이사장 소외 인과 실무책임자가 이사들인 피고들 개개인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차입한도 거래약정 및 차입결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그들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는 서면결의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흥의 정관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45조).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 결의요건

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에는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2항),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제3항)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원심은 “위 정관 등의 규정은 이사회는 실제 회의를 열어야 결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처럼 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는 회의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 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신흥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

6) 대구고등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나9187 판결.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제45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 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신협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협의 정관 제45조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이사회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판결 요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 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조7)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소결론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⁸⁾

2. 서면결의

1) 민법 규정

서면결의에 대한 법령 중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7)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면결의는 유효한다. 단지 정관에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2) 서면결의 판례법리

정관에 달리 서면결의를 금한다거나 그 결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⁹⁾

3. 교회의 서면결

1) 교회 정관상 서면결의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산하 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 법인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에서 이처럼 서면결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등 참조.

“서면결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경우, 민법 제73조 제3항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얼마든지 서면 결의와 위임이 가능하다.

2) 당회, 공동의회의 서면결의

지금까지 살펴본 민법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의해 서면결의가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보여준 판례법리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결의를 할 때 당회원이나 교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 정관에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결의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인 혹은 장로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례법리이다.


4. 결론

서면결의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의사 표시로써 하는 결의하는 방식이다. 회의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회의록 두부분에 서면결의란

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을 적시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이에 서면결의로 찬성한다는 서명지를 회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면결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면결의를 회신해 올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을 복하여 첨부함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하는 하나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위임장에 의한 결의방법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을 잘 숙지하여 활용할 경우, 다양한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획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석율이 저조한 공동의회에 많은 교인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그 진행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 지음, 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
 신국판 양장, 1088쪽, 정가 50,000원
 <개정 증보판>
 헌법 정치면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면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했다.

문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회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총회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2년 동안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 연구를 통해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를 위해 광고로 협찬해 주신 교회와 당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 리폼드뉴스
 기업은행 147-108025-04-016 (예금주: 소재열)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회법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와 필요성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law134@naver.com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차임 오피스텔, 1208호)
 전화 (031) 984-9134



브엘박스 권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중에 권징조례 해설집으로 1,200 페이지의 분량으로 교단과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집대성하였다.

권징조례 초판인 1922년판과 1934년판 그리고 2019년 최근래 판 원문 규정을 삽입하였다. 각 조문해설과 장로회 사법 처리에 대한 법리와 사례를 수록하였다.

주문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올 해는 종교개혁(1517년) 502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온갖 유혹과 핍박속에서도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주장했다.

본 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그 관점(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했다. 비평주의는 성경을 인간 중심, 도덕책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본 서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안내서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성 경은 66권으로 수많은 저자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보여주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이다.

하 나님께서는 구속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 거대하고 놀라운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 구속의 파노라마의 핵심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역사의 핵심이고, 주인공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속역사의 핵심이며,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66권 전체 개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
 김순정 지음, 670쪽 / 25,000원
 구매방법: 통신으로만 판매 / 070-8869-5944
 (정가 25,000원 입금 후 성명, 주소를 알려주시면 발송함)
 농협 215080-51-192831(예금주: 김순정)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박스권, 신국판 양장본
정가 25,000원
〈도서문의 : 070 - 8869- 5944〉



담임 김상운 목사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30 (금암동) (042) 840-9182

행복누림과 영혼남음이 行傳으로 동탄(화성) 민족 열방을 福音化 주다산교회



개혁주의에 근거한
예수 스파크셀로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을
경험하는 교회

스파크셀이란?

- S** Scriptures(성경 중심)
- P** Prayer(기도의 경건 중심)
- A** Action(전도의 삶 중심)
- R** Revival(부흥 중심)
- K** Kingdom of GOD(하나님 나라 중심)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다산교회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60번지(70동사내 532) 동탄종교부지
TEL 031-8015-1091~3 / FAX 031-8015-1094

담임목사 권순웅
부목사 박주안 윤철관 이석 신현호 장요섭
강도사 이봉현 조요섭
전임전도사 강희남 조동순 신영숙 고현주 김영지
권중순

협동목사 오승남 노정수
사무장로 이길섭 최순식 최창원 전영재 송재명 안원석
김재복
협동장로 유인달 정남근 유병국 이호구 정창근
황보병태 이경목

담임목사 권순웅

주다산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기 역임
홍익대음세대문동분부장
충신대약고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주다산교회 www.joodasan.org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살전 5:16-18)



반야월교회는 지역복음화에 헌신하고 다음세대에 관심을 가지며,
교단과 한국교계를 섬기는 넓은 가슴을 가진 열린교회입니다.
반야월교회는 미국복장로회 소속 아담스(J.E.Adams, 安義窩) 선교사에 의해
초가삼간에서 설립(1905년 4월 3일)된 한국기독교 태동기(胎動期) 교회입니다.



41079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55길 20 T.960-7000
대한예수교장로회 반야월교회 담임목사 이승희(李承熙)
www.promisepeople.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역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서광교회

<http://www.sgchurch.kr/>



담임목사 **고광석**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 61:6; 창12:3)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04번길 2 | TEL. 062.251.5005 | FAX. 062.262.4404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김 대 준

전문분야
교회사건, 부동산,
건축, 형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성운빌딩 2층
(02) 522-4531~2 (02) 522-4529 010-5624-4530
이메일 : 999kdj@hanmail.net



교회의 분쟁에 대한 전문 법률지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다감』 은

1.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의 사법심사와 쟁송 범위와 한계 연구
2. 교회 재산의 총유 개념에 따른 소유권과 그 귀속에 대한 연구
3. 교회 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범위와 한계 연구
4. 교단헌법과 지교회 자치법규인 교회정관과의 충돌에 대한 사법권의 판단 연구
5. 교회와 노회, 총회의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6. 60년 동안 대법원의 교회정관 판례법리에 대한 연구와 자문, 소송 전문
7. 교단탈퇴와 교회합병, 분립에 따른 사법권의 판단의 범위와 연구 및 소송
8. 교회 재산의 교단유지재단 등기 후 환원 소송 전문
9.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교인들 중심의 교인총회 결의 방법연구 및 소송
10. 기타 교회, 노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 전문

김대준 변호사는 현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목사 신분이며, 교회 문제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으로 교회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